

동력수상레저기구 개인용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

안녕하세요.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입니다
아래 안내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개인용(신규/정기/임시)
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신청서류 작성

○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

※ **검사지부가 없는 지역 또는 도서 지역은 검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**

1.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규 / 정기 / 임시검사 중 해당 표기
2. 소유자 및 수상레저기구 명세 공란 모두 작성
3. 신청일 및 신청자 기재 후 반드시 서명

※ **검사를 받고자 하는장소(시험운행가능 및 정박지)반드시 표기**

○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

1. 업체명 및 신청자 기재
2. 검사구분, 기구명, 기구종류, 연식, 선체재질, 기관형식, 구조용장비 등을 기재하고, 그 외 장비는 서술 또는 유무로 기재
3. 여러 종류 및 다수의 검사 시 장비명세서 1장에 기재 제출

□ 민원 처리 절차



※ **안전검사 합격 및 최종보고서 작성 후 검사비용 문자로 청구**

□ 최종 제출 서류 목록

- 개인용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대상 장비명세서
- 정기 및 임시검사인 경우 기존 안전검사증 및 등록증 사본
- 개인용 5톤 이상 길이 12M미만인 경우
 - ISO국제 선체식별번호
 -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단, 6M 미만 해당 없음
- 개인용 5톤 이상 길이 12M이상인 경우
 - ISO국제 선체식별번호
 - 중앙횡단면도 및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
 - ※ 신규는 물론 정기검사시에도 도면제출은 반드시 요함
- ISO번호 및 해경청 고시 선체구조 강도요건 부 적합 시
 -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, 강도계산서, 외판전개도, 기관실전체장치도, 전기계통도 추가로 제출
- 항해구역 평수 이상인 경우
 - 무선국검사증서 및 자격증, 무선설비장치, 구명정, 구명뗏목 등 관련 장비 사진

□ 신청서류 제출방법

- 협회이메일 접수 : marine122@hanmail.net
 - ※ 서명날인 된 관련서류 PDF 또는 Jpg파일로 송부
- FAX접수 : 032-772-7122
- 우편접수 : (21995)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
해양경찰청 내 의경동 1층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
- 방문접수 : 평일 오전 10시~오후5시까지 사전연락 후 방문
032-777-9122
 - ※ 및 팩스로 제출하신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검사원이 방문 최종 검사진행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(개인용)

[] 신규 [] 정기 [] 임시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소유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번호)
	주소	
(전화:)		

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또는 위치 :

희망검사원 :

수상 레저 기구 명세	등록번호(신규검사인 경우 생략)	등록번호판 번호(신규검사인 경우 생략)
	종류 :	기구명 :
	재질 :	총톤수 : 길 이 :
	승선 정원 :	제조 연월 :
	기관형식 및 모델명 :	최대 출력 :

비고

[] 총톤수 특정 [] 도면 확인 [] 복원성자료 확인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([]신규 []정기 []임시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안전검사 대행기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(같은 규칙 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합니다) 3.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(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만 해당합니다) 4.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(면제 대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) 	수수료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4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	--

